

부 서 명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
작 성 자	이 진 미
작 성 일 자	2023.1.18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발급

2023. 1.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안마사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인적공제 체크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시 참고해주세요.

공제 항목	공제항목 세부내용						해당 있음	해당 없음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만 나이기준) <table><tr><td>부양가족</td><td>배우자</td><td>직계존속</td><td>직계비속</td><td>형제·자매</td><td>위탁아동</td><td>수급자</td></tr><tr><td>나이요건</td><td>없음</td><td>60세 이상</td><td>20세 이하</td><td>60세 이상, 20세 이하</td><td>6개월 이상 양육</td><td>없음</td></tr></table>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없음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	☐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없음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부녀자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가지 중 1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한 자녀 가 있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니 유의 해주세요.						☐	☐																		
한부모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와 중복적용 배제) ◎부가제출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사실 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																		
경로우대	아래 2가지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1951.12.31. 이전 출생자) 1)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장애인	아래 2가지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1)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부가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_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② 상이자(국가유공자 장애인)는 상이자증명서 사본_발급처: 국가보훈처 ③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_발급처: 의료기관						☐	☐																		
공제 금액	<table><tr><td>인적 공제</td><td>기본공제</td><td colspan="4">추가공제</td></tr><tr><td>공제 대상</td><td>기본공제</td><td>부녀자</td><td>한부모</td><td>경로우대</td><td>장애인</td></tr><tr><td>공제금액</td><td>1명당 15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d>1명당 100만원</td><td>1명당 200만원</td></tr></table>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 대상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금액	1명당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1명당 100만원	1명당 200만원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 대상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금액	1명당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1명당 100만원	1명당 200만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발급

연말정산이란?

2022년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거두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낸 원천세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일정 이상을 넘길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단, 개인마다 소득과 지출이 다르고 부담해야 할 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환급 또는 징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I 소득·세액 자료조회 및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액 자료조회 전 꼭 **부양가족제공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제공동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연말정산간소화

별첨 하고 증명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자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로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기업과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아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안내

- 01 증명명세서 로그인
- 02 자료제공동의 신청
- 0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0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05 전자세금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제공자의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필요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
(조회자와 제공자 모두 신청 가능)

팩스신청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팩스 전송)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

- ✓ 인증서
- ✓ 신용카드
- ✓ 휴대폰
- ✓ 아이핀

미성년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본인인증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제공동의 되어 있는 부양가족과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자동으로 제공동의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공동의의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제공동의 취소

○ 소득·세액 자료 조회

- (1)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예) 2022.01.31.이전 입사자: 1월~12월
2022.02.01.이후 입사자: 2월~12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일괄제공 확인(동의)
간소화자료 제출
역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작성
연말정산 보팅

귀속년도: 2021년 ▼ 전체선택해제

☒ 1월
☒ 7월

☒ 2월
☒ 8월

☒ 3월
☒ 9월

☒ 4월
☒ 10월

☒ 5월
☒ 11월

☒ 6월
☒ 12월

기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1,286,000	1,289,220	835,090	560,710	0	15,936,171	1,402,24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 Monthly rent)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잡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1,152,502	0	0	0	0	0	0

- 중도입사자**(20.1.2.이후 입사자)는 이전근무지가 있어 합산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이전근무지의 근무 월부터 체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2) 🔍 버튼을 건강보험~기부금까지 전체 다 클릭하여 모든 금액을 조회해주세요.
- (3) ‘한번에 내려받기’ 하여 자료 제출준비해주세요. ※ **개인정보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하셔야 합니다.

II 소득공제신고서

○ 공제신고서 작성 창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창에 상단 <공제신고서작성>

The screenshot shows the top navigation bar of the tax portal. The '공제신고서작성' (Form Submission)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rectangle. Other buttons include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입급재공 확인(동역)', '간소화자료 제출', '예상세액 계', and '연말정산 쏘트'.

-팝업창 하단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창 열어주세요.

The screenshot shows a popup window titled '공제신고서 작성'. It contains instructions for using the service, a dropdown menu for '근무처 선택' (Select Workplace) with '해당없음' (None) selected, and a '총급여' (Total Salary) field.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공제신고서 작성' (Form Submission),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 (View Submitted Forms), and '닫기' (Close).

○ 공제신고서 작성

※ '세대주/ 세대원', '근무기간' 본인 요건에 맞게 수정되어있는지 확인 후 수정 하셔야 하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누르시고 아래 순서로 수정해주세요.

The screenshot shows the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Form Submission) page. The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Edit Form)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rectangle. The page includes a progress bar with 'Step.01 부양가족 입력' and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Below the progress bar, there are instructions for using the service. At the bottom, there is a table for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Check Form Content) with columns for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환세액·거주기간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and '선물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STEP1. 기본사항 입력

- 1-1.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여부
- 1-2. 근무기간: 근로시작일 기준 *날짜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서 확인해주세요.
- 1-3.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 1-4.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변동이 있으시면 변동버튼 눌러주세요.

→ 작성 완료 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눌러주세요.

STEP2. 부양가족 입력

☑ 사전 검토항목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혼생입양
☐ 소득자 본인	☐ 내국인			☐ Y	☐ N	☐ N	☐ N	☐ N	☐ N

- 2-1. 소득자본인: 기본공제 이외에도 부녀자·한부모 등 추가공제 대상자는 'Y'로 변경해주세요.
- 2-2. 부양가족: '부양가족추가' 버튼 클릭 후 추가하여 진행해주세요.

※ **부양가족제공동의**를 먼저 받아야만 **부양가족추가** 조회가 됩니다.

- 2-3. 부양가족추가: 공제받을 부양가족 인적사항 입력 후 **적용하기** 버튼 눌러 추가해주세요.

부양가족 정보 추가

· 기재요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하기 **닫기**

- ① 부양가족의 공제대상내용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항목을 'Y'로 변경해주세요.
- ② 만약 작년과 다르게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제외되는 경우 삭제해주시어야 합니다.

→ 작성 완료 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눌러주세요.

STEP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3-1. 지출금액 자료조회가 안된 항목은 **수정** 누른 후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 3-2. 조회되지 않는 항목 및 챙기셔야 할 항목들 체크하시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 현금 결제한 안경·렌즈 구입금액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안경·렌즈 구입비는 체크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금결제 한 내역은 조회가 안 되오니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주세요.

☒ 실손 보험금 수령금액

22년 의료비 지출 후 23년 실손 보험금을 수령할 시 2024년에 연말정산에 보험금이 조회됩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23년 공제 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임차비용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의 누락된 의료비용

☒ 월세액 자료

☒ 2022년 성인이 된 자녀(만20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만 20세(03.12.31.이전 출생자) 성인 자녀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지출내용이 확인됩니다.

- ☒ 공제대상 자녀 및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 정치자금기부금 및 종교·사회복지·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수정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이동** 버튼 눌러주세요.

STEP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4-1.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4-2. 아래와 같이 안내메시지가 보이면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www.hometax.go.kr의 메시지

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증권번호) 일부에 *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성명,계좌번호(증권번호)의 일부를 *표시 하시겠습니까?

ex) 확인버튼 클릭시 : 820224-***** , 김*** , 087002*****

취소버튼 클릭시 : 820224-1111111 , 김영희 , 087002215555

확인

취소

Ⅲ

연말정산 자료 제출서류

○필수 자료

1. 소득공제신고서
2. 소득·세액 자료조회

1-1. 소득공제신고서 필수 첨부해야 할 서류

- (1) 기본인적공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작년 연말정산 내용과 변동이 없으신 분들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동이 있으신 경우는 필수로 제출해주세요.

- (2) 추가인적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사본
- (3)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합산해서 신고하실 대상자만 제출해주세요.

1-2. 소득공제신고서 추가자료 첨부해야 할 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1)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 · 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 ·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교육비납입증명서 (2)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